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5(목) 10:00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25호
- 나. 제 출 자 : 고성미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4. 15.
- 라. 회부일자 : 2024. 4. 15.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 바.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사.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31조, 제32조의3
 -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1)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용어를 적용하고 조례 정의를 규정함

-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나 예비범죄자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가부에 ‘가출’이라는 표현을 ‘가정 밖’으로 변경을 권고함.
- 이에 따라 용어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지역 4년만에 여가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021.3.23.)에 따라 ‘가출 청소년’이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함

2)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필요한 지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함

3)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4)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5)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보호 및 생활 지원,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규정함

6)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설치 운영의 근거를 규정함

7)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함(안 제11조)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함

다. 검토의견

-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성장 환경 또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의 성장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망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 보며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제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2024. 4.25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등 필요한 조치가 강화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약칭: 청소년복지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1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3.>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목개정 2021. 3. 23.]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3. 10. 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목개정 2021. 3. 23.] [시행일: 2024. 4. 25.] 제16조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4. 4. 25.] 제32조의3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